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안 번 호 제2022-009-060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**의결연월일** 2022. 5. 25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(법률 제16930호, '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이며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 일반현황 >

| 대표자 | 설립 일자 | 직원 수 | <b>자본금</b> ('20년 기준) | 주요서비스 |
|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1)는 '2021. 4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가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관리실태 현장 검사('21. 6. 14.~6. 16., 7.6.)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# 1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#### 가. 사고 경위 및 규모

피심인은 홈페이지의 관리·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· 보관하고 있었으며, 해당 홈페이지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가 '설문이벤트'를 진행하면서 이벤트 결과 페이지 정보를 '공개'로 잘못 설정하여 '21.4.24(토) 00:00~4.26(월) 10:00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.

조사 결과 명의 성명, 연락처, 주소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다.

<sup>1) 2020. 8. 5.</sup> 시행된 개정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)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(제2항),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·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(제3항)

#### 나. 유출인지 및 대응

- ('21. 4. 26. 10:00) 수탁사의 관리자가 모니터링 중 '종료된 이벤트 보기'의 결과값 노출 인지 후 즉시 '비노출'로 처리
- o ('21. 4.27. 13:28) 수탁사의 연락을 받고, 수검기관에서 유출사실 인지
- ('21. 4. 28. 15:58) 해당 페이지 접속자(명)에게 정보유출 방지 협조 요청
- ('21. 4. 28. 17:05)
  명 대상 개인정보 유출통지(이메일, 문자, 우편)
 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사실 게재
- ('21. 4. 28. 18:08) 개인정보종합포털에 개인정보 유출신고
- ('21. 5. 4~'21. 6 10) 유출 관련 후속조치
- ('21. 5. 4~'5. 6) 수탁사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, 전 직원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
- ('21. 5. 11) '개인정보보호 및 수탁사 관리감독 강화' 당부
- **('21. 5. 20)** 수탁사 현장점검 및 교육 확대계획 수립(연 1회→ 반기 1회)
- ('21. 6 10)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 규정 개정 및 전사적 공유

## 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## 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1)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,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

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. 2. 9.~2022. 2. 25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(안)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2022. 2. 24.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#### 가. 관련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- 1)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안전성 확보조치로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,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,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,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, ⑤개인정보 보안프로그램의 설치·갱신,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.
- 2)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2호,

이하 '고시'라 함)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(고시 제6조제3항)

#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6호 제3항)은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.

## Ⅳ. 처분 및 결정

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「과태료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가. 기준금액

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 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 2] >

(단위 : 만원)

|  | 근거 법조문   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|
| 위반행위   |                  | 1회 위반  | 2회 위반 | 3회 이상<br>위반 |  |
| 자. <b>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</b><br>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5조<br>제2항제6호 | 600    | 1,200 | 2,400       |  |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없이 기준 금액을 유지한다.

##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을 완료한 점, 조사 기간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·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.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| 과태료 처분               | 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위반조항                 | 처분 조항          | 기준<br>금액(A) | 가중액<br>(B) | 감경액<br>(C) | 최종액(D)<br>D=(A+B+C) |
| 제29조(안전성확보 조치 의무 위반) | 법 제75조제2항제6호   | 600         | -          | △300       | 300                 |

## V. 결론

피심인의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2022년 5월 25일

위원장 윤종인 (서명)

부위원장 최 영 진 (서 명)

위 원 고성학 (서명)

위 원 백대용 (서명)

위 원 서종식 (서명)

위 원 염흥열 (서명)

위 원 이희정 (서명)

위 원 지성우 (서명)